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7. 7. 제천시장
나. 회부일자 : 2009. 7. 9.
다. 상정일자 : 2009. 7. 13.(제161회 임시회 차지행정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가. 제안이유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공무원의 종교 중립의무의 신설과 2008년도 단체협약 체결에 따라 공무원의 특별휴가 일수 조정 및 당직근무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 (안 제5조 제3항)
 - 당직 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하며 당직수당의 지급액은 규칙으로 정함 (안 제7조의 2)
 - 공무원의 특별휴가 일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 (안 제23조 제1항 별표3)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홍완식)

【 법적 검토 】

- 지방공무원법 제51조의 2에서는 공무원의 종교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3에서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동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동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고,
- 지방공무원 당직은 자치단체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의거 근무시간외에 화재·도난 기타사고의 경계 및 문서처리와 업무연락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근무를 명하고 실비로 당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위임 한도내에서 행정절차법에 의한 입법예고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하여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등 법적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법적인 이견은 없음

【 행정적 검토 】

- 별표3, 공무원의 특별휴가 일수는 현행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제천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천시지부 사이에 체결(2009.2.16)된 단체협약을 반영시킨 사항이며
- 조례안 제7조의 2는 현행 조례로 당직근무수당 지급액을 규정하였던 사항을 제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 자료

[별표 3 관련]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 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현 행 (제천시)	제천시 개정안	국가 공무원	충북도 (08.12.26)	청주시 (08.11.28)	충주시 (09.3.9)
결혼	본인	7	7	7	7	7	7
	자녀		1		1	1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1	1	1
출산	배우자	3	3	3	3	3	3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 우자의 부모	5	5	5	5	5	5
	본인 및 배우자의 <u>증조부모</u> · 조부모 · <u>외증조부모</u> · 외조 부모	2	3	2	3	3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5	2	3	3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3		3	3	2
	본인 및 배우자 부 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3	2	2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 우자의 부모		1		1	1	1
입양	본인	14	14	14	14	14	14

* 상기 비교기관에서는 증조부모와 외증조부모의 사망시 특별휴가는
없음

□ 기관별 당직근무 수당지급 근거 규정 현황

구 분	해당 자치단체	비 고
복무조례상에 금액명시	청주, 충주, 제천, 평택, 하남, 익산시	현행 제천시
복무조례에 예산의 범위내 지급으로 명시	서울특별시, 부산 광역시, 대구광역 시, 경기도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경남 도청, 대구 달서구, 대전대덕구, 경기 동두천, 안산, 구리, 의왕, 이천, 여주, 가평, 양평, 군산, 김제, 포항, 경주, 김 천, 안동,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당직근무자 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당직수당지급 조례에 명시	충북도청, 충남도청, 강원도청, 충북 청원, 영동, 진천, 피산, 음성, 단양군, 공주, 보령, 아산, 논산, 서산, 금산, 청양, 흥성, 예산, 인제, 양구, 원주, 성 남, 서울중구,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명시	인천 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남도청, 서울 종로구, 서울 용산구, 서울 광진 구, 서울 강북구, 대구 달성군, 광주 동구, 광주 남구, 안양, 수원, 파주, 마산, 대전 동구, 대전 서구, 전북 전 주, 남원시, 완주, 경남 창원, 사천, 거 제, 양산, 창녕, 의령, 고성, 목포, 나 주, 담양	

4. 질의 및 답변 요지(답변자 :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 부칙조항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7조 4항 및 7조 2의 규정에 의해서 소급하겠다는 것인지?(박성하 의원)
: 맞음.
- 규칙은 정해져 있는 것인지?(박성하 의원)
: 이거에 따라서는 아직 안정해져 있음.
- 꼭 소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박성하 의원)
: 소급은 2008년도 단체협약이 끝났기 때문에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음.
- 시행은 소급해서 하는거 참 이거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함. 시행한 달부터 시행하는거 어떤지?(성명중 의원)
: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는게 원안이라고 생각함.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휴가일수표가 제천만 5일인데, 개정안으로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양순경 의원)
: 특별한 사항은 없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개정하는 사항임. 이것도 경사가 아니고 애사기 때문에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도 역시 아들이나 며느리나 사위나 딸이나 같은 맥락에서 이틀을 더 증가시켰음.

5. 소수의견

“없음”

6. 토론요지

- 국내외 경제여건과 우리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조례안 부칙내용 중 당직비 지급시기의 임의적용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자 함.

7. 심사 내용

- 성명증 위원의 수정안 발의(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
- 수정안 표결결과
 - 출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가결(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

8.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

9. 심사보고 붙임서류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끝.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제4항 및 제7조의2 규정은 「제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p>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제4항 및 제7조의2 규정은 「제 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 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